

# 공무직직원정원관리내규

제정 2014.12.31 내규 제279호  
개정 2015. 8.24 내규 제296호  
2015.12.30 내규 제304호  
2017. 4. 1 내규 제336호  
2017. 4.26 내규 제339호  
2018. 2. 1 내규 제367호  
2018. 8.28 내규 제380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직제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의 공무직 직원의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원관리부서”라 함은 조직관리부서를 말한다.
2. “예산부서”라 함은 공단의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인력관리부서”라 함은 공단의 인력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고용부서”라 함은 공무직 직원을 고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무직 직원의 정원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정원)** 공무직 직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8.24, 2015.12.30.)

**제5조(정원조정요구)** 고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별표1 에서 정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정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정원관리 부서에 요구하여야 한다. 단, 정원관리부서에서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소관 사업의 업무량의 변동
2. 신규 사업 인수·개발, 프로젝트성 사업수행 등에 따른 사업변동
3.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6조(정원조정승인)** 정원관리부서의 장은 고용부서로부터 공무직 직원 정원조정 요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정사유, 인원, 기간 등의 적정여부 및 정규인력과의 상계여부, 예산수반여건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정원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예산부서, 인력관리부서와 고용부서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진단)** ① 정원관리부서의 장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량분석, 정원배정의 적정성 분석 등 정원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력진단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2014.12.31)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8.24.)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0.)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4.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26)(정관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2.1.)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28.)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5.8.24, 2015.12.30, 2017.4.1, 2018.2.1, 2018.8.28.)

정 원 표

구 분 (부서/직렬)	계	설 비	보 안	경 비	주 차	청 소	공 공 자전거 관 리
계	898	120	37	161	91	352	137
총 무 처	38	16	7		2	13	
상기운영처	389	93	7	121		168	
추모시설운영처	39		2	2	9	26	
장애인콜택시운영처	1					1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46		5	14		27	
돔경기장운영처	34	5	11		5	13	
서울어린이대공원	51	6	3	19		23	
청계천관리처	33					33	
도로시설처	1		1				
도로환경처	11		1			10	
공동구운영처	1					1	
주차시설운영처	88				75	13	
교통시설운영처	29			5		24	
공공자전거운영처	137						137

<별지 제1호 서식>(제5조 관련)

공무직 직원 정원조정 요구서	
업무분야 ※업무량 등 구체적 기재	
조정사유 ※ 환경변화등 구체적 기재 ※ 관련근거 문서등 기재	
요 구 인 원	(직렬) _____ (요구인원) _____ 명
요 구 부 서	부서명 _____ (회계명: _____ )
사 용 기 간	
예 산	소요예산 _____ 천원(기간 ~ )
	가용예산 _____ 천원(기간 ~ )
	조치계획 ※ 부족예산에 대한 계획 구체적 기재
공무직 직원 정원관리내규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원 조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